

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44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년 2월 20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신설되는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하도록 보장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민관예산협의회 구성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하도록 단서를 신설함(안 제19조의1제2항).
- 나. 일부 조항에 인용된 조문 등을 일치하도록 정비함(안 제15조제6항 등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5조제6항 중 “제8조제2항”을 “제25조제10항”으로 한다.

안 제19조의1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, 공무원,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. 다만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.

안 제19조의1제4항 중 “공무원이”를 “회장은 공무원이”로 한다.

안 제28조제2항 중 “위원회, 협의회”를 “위원회, 협의회, 민관예산협의회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<p>제9조(의견수렴 절차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<u>의견</u>을 수렴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의견수렴 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주민 및 단체의 의견 -----.</p>	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
<p>제15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<u>250</u>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1.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<u>공개 모집절차</u>에 의해 선정된 자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15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300</u>명-----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추첨방식</u>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<u>제8조제2항</u>에 따른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.</p>	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<u>제25조제10항</u>에 따른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.</p>
<p>제16조(위원의 위·해촉 및 임기)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,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,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. 이 경우 선정된 자</p>	<p>제16조(위원의 위·해촉 및 임기) ① <삭제></p>	<p><개정안과 같음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<p><u>중에서 제8조제2항에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정수의 1/2범위에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② <u>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
<p>제19조(기능)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주민의견 사업을 <u>분과위원회</u>에 심사 부의</u></p> <p>5. <u>주민 및 지역회의, <u>분과위원회</u>의 의견 심의·조정·결정</u></p> <p>6. <u>총회·<u>분과위원회</u> 개최</u></p> <p>7. ~ 10. (생략)</p>	<p>제19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민관예산협의회</u>-----</p> <p>5. ----- <u>민관예산협의회, 기타 기능분과</u>-----</p> <p>6. ---- <u>기능분과 개최 및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</u></p> <p>7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	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
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19조의1(민관예산협의회 등) ① <u>시장은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실·국·본부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, 공무원,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.</u></p>	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② <u>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, 공무원,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. 다만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<신설>	③ <u>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한다.</u>	<개정안과 같음>
<신설>	④ <u>민관예산협의회는 회장,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	④ <u>민관예산협의회는 회장,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
<신설>	⑤ <u>민관예산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</u>	<개정안과 같음>
<신설>	⑥ <u>간사는 민관예산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</u>	<개정안과 같음>
<신설>	⑦ <u>그 밖의 시 재정분야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분과를 둘 수 있다.</u>	<개정안과 같음>
<신설>	⑧ <u>그 밖의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.</u>	<개정안과 같음>
<p>제20조(분과위원회) ① <u>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.</u></p> <p>② <u>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,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의견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.</u></p> <p>③ <u>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, 시의 업무 분야별 10개 이내로 구성한다.</u></p>	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	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<p>④ <u>분과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분과별 소관부서의 주무과장은 공무원 간사가 된다.</u></p> <p>⑤ <u>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.</u></p> <p>⑥ <u>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</u></p> <p>⑦ <u>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,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⑧ <u>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</u></p>	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	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
<p>제22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<u>분과위원회</u> 회의를 개최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<u>분과위원회</u>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위원회 및 <u>분과위원회</u>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22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----- ----- ----<u>기능분과</u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<u>기능분과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기능분과</u>----- ----- -----.</p>	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
<p>제25조(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, 예산 관련 전문가, 비</p>	<p>제25조(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	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<p>영리민간단체 관계자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, 관련 공무원 등 <u>15명</u> 이내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<u>과반수</u>를 넘지 않도록 한다.</p> <p>③ ~ ⑪ (생략)</p>	<p>----- -----<u>25명</u>----- -----<u>2분의 1</u>----- -----</p> <p>③ ~ ⑪ (현행과 같음)</p>	<p><개정안과 같음></p>
<p>제28조(재정 및 실무지원) ① ~</p> <p>② 시장은 <u>위원회, 협의회</u>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28조(재정 및 실무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<u>위원회, 협의회</u>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<u>위원회와 협의회, 민관예산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『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』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<개정안과 같음></p> <p>② 시장은 <u>위원회, 협의회, 민관예산협의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개정안과 같음>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중임하는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</p>	<p><개정안과 같음></p>

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의견” 을 “주민 및 단체의 의견” 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250명” 을 “300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공개모집절차” 를 “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,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9조제4호 중 “분과위원회” 를 “민관예산협의회” 로 하고, 제5호 중 “분과위원회” 를 “민관예산협의회, 기타 기능분과” 로 하며, 제6호 중 “분과위원회 개최” 를 “기능분과 개최 및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” 로 한다.

제1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1(민관예산협의회 등) ① 시장은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실·국·본부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, 공무원,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. 다만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.

③ 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의 기능을 한다.

④ 민관예산협의회는 회장,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회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⑤ 민관예산협의회 회의는 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⑥ 간사는 민관예산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.

⑦ 그 밖의 시 재정분야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분과를 둘 수 있다.

⑧ 그 밖의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운영계획으로 정한다.

제20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삭제한다.

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분과위원회”를 각각 “기능분과”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15명”을 “25명”으로 하고, “과반수를”을 “2분의 1을”로 한다.

제28조제2항 중 “위원회, 협의회”를 “위원회, 협의회, 민관예산협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위원회와 협의회, 민관예산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『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』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중임하는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③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의견수렴 절차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<u>의견</u>을 수렴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의견수렴 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주민 및 단체의 의견</u> -----.</p>
<p>제15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<u>250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1.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<u>공</u> <u>개모집절차</u>에 의해 선정된 자</p>	<p>제15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300명</u> -----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예산</u> <u>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</u> <u>방식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2. ~ 5.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.</p>
<p>제16조(위원의 위·해촉 및 임기)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공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,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,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. 이 경우 선정된 자 중에서 제8조제2항에 예산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정수의 1/2범위에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16조(위원의 위·해촉 및 임기) ① <삭제></p> <p>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기능)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지역회의 및 시민이 제안한 주민의견 사업을 분과위원회에 심사 부의</p> <p>5. 주민 및 지역회의,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·조정·결정</p> <p>6. 총회·분과위원회 개최</p> <p>7. ~ 10. (생략)</p>	<p>제19조(기능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민관예산협의회-----</p> <p>5. ----- 민관예산협의회, 기타 기능분과-----</p> <p>6. ----기능분과 개최 및 민관예산협의회에 참여</p> <p>7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	<p>제19조의1(민관예산협의회 등) ① 시장은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 사업의 심의·조정 등을 위하여 실·국·본부에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, 공무원,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. 다만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3분의 2이상 참여해야 한다.</p> <p>③ 민관예산협의회는 주민 및 단체가 제안한</p>

현행	개정안
<p>제22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<u>분과위원회</u> 회의를 개최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<u>분과위원회</u>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③ 위원회 및 <u>분과위원회</u>는 재적위원 <u>과반수</u>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<u>과반수</u>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22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----- ----- -----<u>기능분과</u>-----.</p> <p>② ----- -----<u>기능분과</u>-----.</p> <p>③ ----- <u>기능분과</u>----- -----.</p>
<p>제25조(구성 및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협의회는 시의회 의원, 예산 관련 전문가,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, 관련 공무원 등 <u>15명</u> 이내로 구성하되,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<u>과반수</u>를 넘지 않도록 한다.</p> <p>③ ~ ① (생략)</p>	<p>제25조(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25명</u>----- -----<u>2분의 1</u>-----.</p> <p>③ ~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8조(재정 및 실무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<u>위원회, 협의회</u>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<u>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28조(재정 및 실무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<u>위원회, 협의회, 민관예산협회의</u>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<u>위원회와 협의회, 민관예산협회의 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『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』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중임하는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</p>